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발행규정

2005. 12. 12. 제　　정
2008. 8. 18. 전면개정
2013. 11. 25. 일부개정
2014. 8. 8. 일부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제1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원(이하 '법과정책연구원'이라 한다)의 학술지 '법과정책' 및 '국제법무'(이하 '학술지'라 한다)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간행) ① 법과정책연구원의 학술지는 '법과정책'과 '국제법무' 2종으로 한다.

② 학술지는 '법과정책'은 연 3회, '국제법무'는 연 2회 발행하되, 발행일자는 '법과정책'은 매년 3월 30일, 8월 30일, 12월 30일에, '국제법무'는 매년 5월 30일, 11월 30일로 한다. (개정 2013. 11. 25)

③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접수일(2***년 **월 **일), 심사완료일(2*** **월 **), 게재확정일(2***년 **월 **일)을 기재한다.

④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3조(논문게재순서) 학술지의 논문게재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획논문이나 특별기고논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조(별쇄본 및 전자출판)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. (개정 2013. 11. 25)

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.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.

③ 법학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다.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.

④ 원고제출자는 법과정책연구원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, CD-ROM 등 각종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개정)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　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이 규정의 제2조 제2항, 제4조 제1항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'법과정책연구소

를 ‘법과정책연구원’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.